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27**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역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에 따라 「하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나. 위원회 기능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3)

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4)

라. 위원회 임기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5)

마. 위원회 직무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6)

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7)

사.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8)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2. 26. ~ 2021. 3. 18.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개선의견

일부 반영 완료

-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추가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하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의4(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하남시 보행업무 담당국장, 보행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공원업무 담당과장, 하천업무 담당

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분야의 전문가
- 3.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의5(위원의 임기) 제9조의4제3항 각 호의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의6(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행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의7(회의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8(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도로관리과
입 안 자	부서장	도로관리과장
	직위·성명	김성집
	팀장	도로보수팀장
	직위 · 성명	박종진
	담당자	박기헌
	성명 · 전화번호	(790-582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ਪ o	/川 0 ゼ
<u><신 설></u>	제9조의2(하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의 설치)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9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 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4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하남시 보행업무 담당국장, 보행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고통업무 담당과장, 장원업무 담당과장, 공원업무 담당과장, 하천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성

	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람</u>
<신 설>	제9조의5(위원의 임기) 제9조의4제3항 각
	호의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6(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 <u>.</u>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행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u> </u>	제9조의7(회의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8(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위원회
	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 </u>

관계법령 발췌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8조의3